지능형 CCTV 성능 시험·인증 지침

제정 2016. 11. 16. 개정 2020. 3. 11. 개정 2021. 8. 24. 전부개정 2021. 12. 23. 개정 2024. 4. 23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"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이 지능형 CCTV 성능 시험·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.

- 1. "지능형 CCTV"란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의 객체를 추적해 배회, 싸움, 방화와 같은 행위를 식별하는 솔루션 및 장치를 말한다.
- 2. "신청인"이란 진흥워에 시험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.
- 3. "시험자"란 신청인으로부터 시험·인증 의뢰를 받아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이 선정한 자를 말하다.
- 4. "사전시험"이란 신청인이 신청인의 제품 성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시험용 영상 DB로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.
- 5. "본시험"이란 신청인이 인증을 받기 위하여 진홍원의 인증용 영상DB로 수행하는 시험을 말하다.
- 6. "인증"이란 진흥원이 본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CCTV 성능이 시험기준 및 규정된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인증분야"란 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배회, 침입, 유기 등 시나리오를 의미한다.
- 8. "인증기준" 이란, 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최소 성능 점수를 의미한다.

제2장 시험 · 인증 절차

제3조(시험·인증 절차) 지능형 CCTV 성능 시험·인증 절차는 별표 1 과 같다.

제4조(시험분야 및 기준) 인증분야 및 인증기준은 진흥원이 정하며,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한다.

- 제5조(시험신청) ① 사전시험 또는 본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별지 제1호 서식 지능형 CCTV 성능 시험 신청서

- 2.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서약서
- 3.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. 법인등기부등본
- ② 진흥원은 신청인이 시험을 신청한 경우, 신청인의 시험을 수행을 위하여 시험 공간 및 시험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진흥원은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제출물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신청인은 시험자의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 및 제품을 보완하여야 하며,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- ⑤ 신청인이 사전시험 또는 본시험을 신청하고 시험 일자에 시험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, 시험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24.4.23.>
- 제6조(시험자 선정) ① 진흥원은 시험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소속되거나 시험·인증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시험자로 선정할 수 있다.
 - ② 시험자 선정 시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시험자는 제외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인에 소속(근무)되어 있거나 과거 3년 동안 소속된 경력이 있는 자
 - 2. 신청인의 지능형 CCTV 솔루션 개발 등 시험·인증 제품 관련 업무를 과거 3년 동안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
 - 3. 그 밖에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
 - ③ 시험자는 결과보고서 및 최종제출물 검토 등 시험 인증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.
- 제7조(시험업무 준비) ① 시험자는 지능형 CCTV 성능 본시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제출물에 대한 시험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출물에 대한 설명
 - 2.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환경 지원
 - 3. 기타 진흥원이 시험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- ② 시험자는 시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- 제8조(사전시험) ① 시험자는 신청자의 지능형 CCTV 솔루션에 대하여 사전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.
- ② 시험자는 사전시험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인은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 후 사전시험을 진흥원에 재신청할 수 있다.
- 제9조(본시험) ① 시험자는 사전시험을 통과한 지능형 CCTV 솔루션에 대해 본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, 본시험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0조(시험 중단) ① 시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알려야 하며, 진흥원은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.
 - 1. 제출물 및 개발환경의 보완을 요청받은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2. 신청인이 고의로 시험·인증업무를 지연 또는 방해하는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시험신청, 보완조치 등 일련의 시험·인증과정 중에 시험·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정보보안 사고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4. 재난, 재해, 질병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5. 신청인의 보완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
- 6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흥원에서 시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파단되는 경우
-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험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보완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100일(재조치 요구 60일 포함)이내에 보완조치가 완료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신청인은 제3항의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 완료 후 진흥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진흥원은 시험이 중단될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물을 반환하여야 하고,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결과보고) ① 시험자는 본 시험이 종료되고 시험기준을 통과한 경우,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능형 CCTV 성능 시험·인증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진흥원은 시험수행의 적절성과 시험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. 다만 시험내용 및 과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시험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2조(인증서 발급) ① 진흥원은 시험결과가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,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능형 CCTV 인증서 및 제11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② 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2 지능형 CCTV 성능인증 인증서 인증번호 부여기준을 따른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- 제13조(인중제품 공개) 진흥원은 인증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능형 CCTV 성능 시험·평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능인증제품을 공개할 수 있다.
- **제14조(재발급)** 신청인은 결과보고서 또는 인증서를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, 별지 제4호 서식의 재 발급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15조(인증기간 연장)** ① 신청인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연장 신청서를 통하여,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1회 인증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진흥원은 1항에 따른 신청인의 연장신청서 및 공문을 검토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최소인증 설정기준 등 시험·인증 기준과 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, 이를 적용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인증 연장여부를 거부할 수 있다.

제3장 인증위원회 운영

- 제16조(인증위원회 구성) ① 진흥원은 인증분야, 인증기준의 수정, 인증 취소 등 인증기관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인증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인증기관, 관계기관,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진흥원은 인증위원 위촉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위원 위촉장을 수여한다.
- ④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, 위원,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증제도 담당 사업팀장이 담당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17조(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)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촉할 수 있으며,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 - 1. 인증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금품수수,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,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원이 그 사실이 확인되어 위촉이 취소된 경우
 - 2. 인증위원의 사임, 퇴직, 이직, 해임,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위촉이 취소된 경우
- 제18조(인증위원회 회의 개최) 진흥원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일시, 장소, 안건 및 기타 관련사항을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간사로 하여금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결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서면 또는 원격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제19조(심의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서면의결 시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 심의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20조(인중 취소) ① 진홍원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인증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인증제품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 - 1.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·인증을 받은 경우
 - 2. 사회적 이슈 또는 법적 위반 행위 등 인증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

제4장 시험·인증업무 일반 등

- 제21조(비밀 유지 등) ① 진흥원, 인증위원회 위원, 시험자 등 시험·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진흥원, 인증위원회 위원, 시험자 등 시험·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

인증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, 금품,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진흥원은 시험·인증의 공정성, 신뢰성, 시험시설의 보호와 신청자 및 시험결과에 대한 비밀보장 등을 위하여 시설 및 문서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22조(문서관리) ① 진흥원은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결과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 서류 및 결과보고서 등을 시험 완료일로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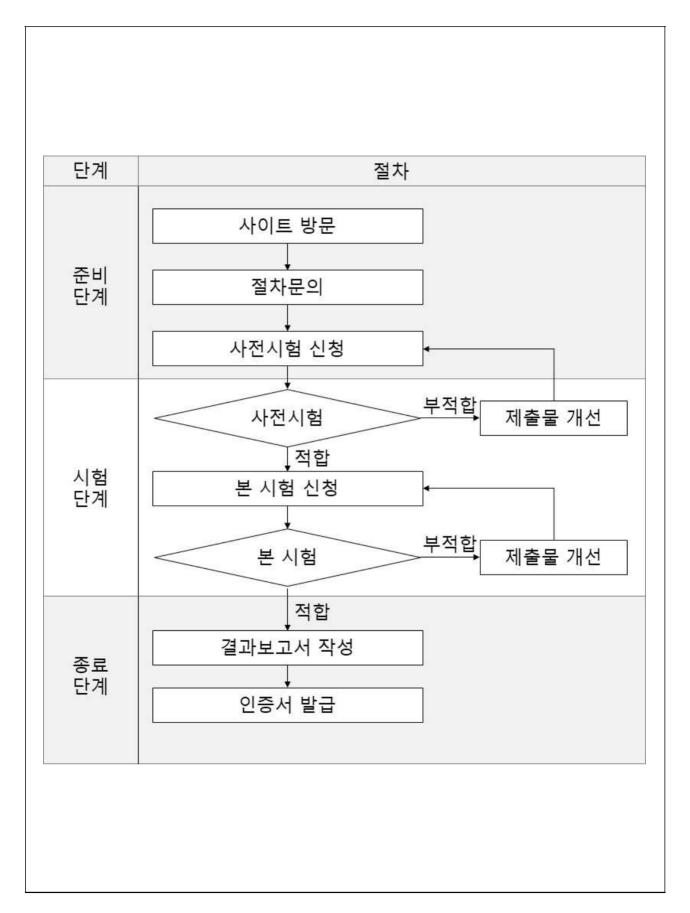
부 칙 <2021. 12. 23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 4. 23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u>지능형 CCTV 성능 시험・인증 절차(</u>제3조 관련)



[별표 2]

지능형 CCTV 성능인증 인증서 인증번호 부여기준(제12조 관련)

1. 지능형 CCTV 성능 시험·인증의 인증서 인증번호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다.

	인증번호 부여 기준										
K	K I S A - I C - X X X - X X X										
	① ② ③ ④										
한국인터넷진흥원 식별번호					인증 식별		인증서 발급년도 제품			ll품식 '	趋

- 2. ① 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임을 나타내는 'KISA'를 기재한다.
- 3. ②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'인증분야 식별부호'를 기재한다.

시험분야	식별부호
지능형 CCTV 성능평가	IC (Intelligence CCTV)

- 4. ③ 란에는 '인증서 발급년도'(숫자)를 기재한다.
- 5. ④ 란에는 인증기관 및 진흥원이 부여한 '인증서 식별부호'를 기재한다.

		지-	능형 CCTV 성능	시험 신청	성서	(/// //			
신 청 인	상 호	한글							
	영 호	영어							
	주 소	한글							
	주 소	영어							
	대 표 자	한글		법인등록번호					
	성 명	영어		사업자등록번호					
	담 당 자			전화					
	= 0 N			이메일					
신청 유형	형 □ 사전시험 □ 본 시험 (1개만 선택 가능)								
인증신청정보	분 0	‡							
COCOST	항 도	+							
계 프 저 L	r⊎ *	한글		ᆈᅯ	한글				
제품정보	명 칭	영어		- 버전	영어				
제출물	- PC, 매 □ 인증 :	기준 통과시	트웨어 등(필요시 하드웨어 사임 지능형 CCTV 제품 실행 파일 -, 코덱, 영상처리 라이브러리		E 제출				
재난, 재해, 있음을 확인	※ 한글 또는 영문으로만 작성 상기와 같이 시험을 신청하며,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재난, 재해, 질병,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이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시험실 사용 신청 후, 미이용 시 시험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
				년 월	일				
				신 청 인		(서명 또는 인)			
			한국인터넷진흥	원장 귀하					

보안서약서

제품명	
기관명	
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대표자명	

※ 본 보안서약서는 대표이사의 서명을 원칙으로 하며,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 기관 명의의 공문(위임 내용 포함) 혹은 위임장을 통해 예외적으로 위임(대리)자의 작성이 가능함 ※ 공동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경우, 전체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서명 필요

본 신청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지능형 CCTV 성능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진흥원 지침 및 국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.

또한, 지능형 CCTV 성능 시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실과 제공받은 데이터를 성능 시험 수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성능시험취소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배상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: (서 명)



KISA Verified

지능형 CCTV 성능시험 결과보고서

회사명:

제 품 명 :

인증분야/ 이증항목 Test Summary

K-ICTC Korea Intelligence CCTV Test Center

목 차

- 1. 시험 환경
- 2. 시험 항목
- 3. 시험 조건
- 4. 시험 결과

평가결과

검출률	정밀도	평가점수

재발급 신청서								
	상 호	한글						
신 청 인	대표자			법인등록번호				
	성 명	한글		사업자등록번호				
				전화				
	담 당 자			이메일				
신청유형	□ 결과보.	고서 🗆 인	!증서					
인증서 정보	인증번호							
제품정보	명 칭	한글		버전	한글			
재발급 사유								
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 ※ 타사(他社)제품의 시험내용에 대한 결과는 요청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였습니다.								
				년	월 일	<u>!</u>		
			신	청 인		(서명 또는 인)		
	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							



인 증 서

인 증 번 호 :

업 체 명: 대 표 자:

소 재 지:

제 품 명:

인 증 분 야 :

인 증 항 목 :

유 효 기 간 :

시 험 기 관 :

지능형 CCTV 성능 시험·인증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함을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인터넷진흥원장

직인



CERTIFICATE

Certificate	No.	:		

Company : Representative :

Location :

Certified Product:

Category :

Section :

Period of validity : $xx/07/2021 \sim xx/07/2024$

Test Organization:

Test organization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appropriately qualified for the criteria of Intelligence CCTV Solution certification.

dd, mm, yy

KOREA INTERNET & SECURITY AGENCY

인증연장 신청서

- 1. 신청인 :
- 2. 인증 연장 대상 솔루션 :
- 인증 내용 :
- 인증 번호 :

지능형 CCTV 성능 시험·인증지침에 의하여 상기 제품의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

제 - 호

위 촉 장

소 속:

성 명:

위 촉 기 간 :

귀하를 지능형 CCTV 성능 시험·인증지침에 의거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인터넷진흥원장

직인